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9월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건설업,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1.1% 감소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비금속광물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1.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2024년 9월 소비는 전월대비 0.4%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4%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1%)에서 줄었으나,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8.4%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6.1%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3.1% 증가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9월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8월p	9월p
생산	전 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0.8	1.3(1.3)	-0.3(-1.1)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1.9	4.4(3.8)	-0.2(-1.3)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2.0	4.4(3.7)	-0.1(-1.4)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0.4	-1.9(-9.2)	-0.1(-12.1)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0.2	0.3(1.1)	-0.7(-0.2)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1.0	1.7(-1.3)	-0.4(-2.2)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7.8	-5.1(7.5)	8.4(6.1)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4	0.1(1.6)	0.0(1.3)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10월, 2024년 9월, 2024년 10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음(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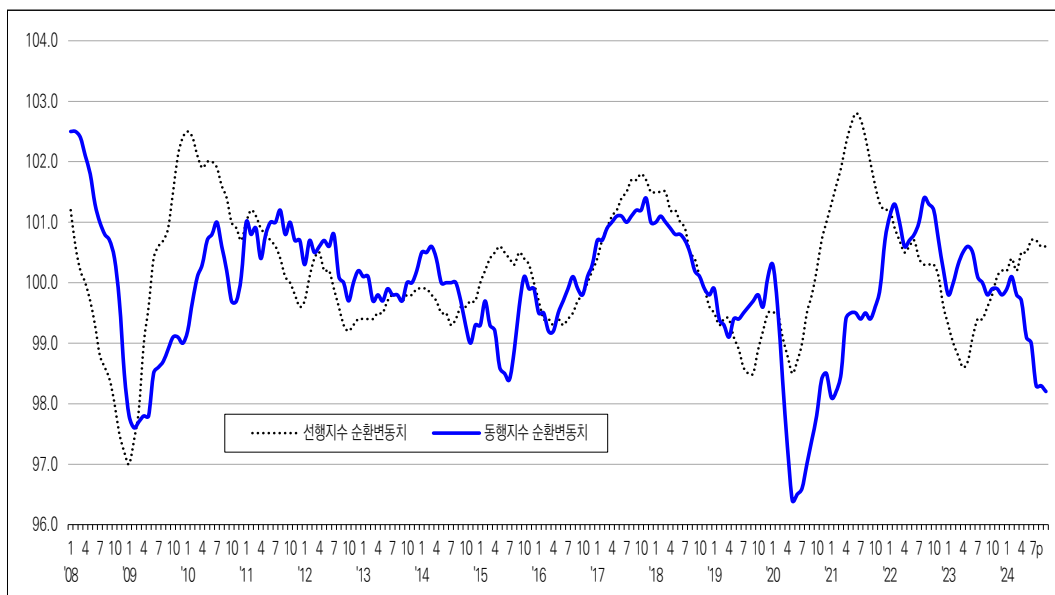
○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100)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음식·숙박(0.5%), 기타 상품·서비스(0.9%), 주택·수도·전기·연료(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의류·신발(0.3%), 주류·담배(0.2%)는 상승, 교육, 통신은 변동 없으며, 보건(-0.1%), 오락·문화(-0.1%), 식료품·비주류음료(-0.2%), 교통(-1.2%)은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

◆ 2024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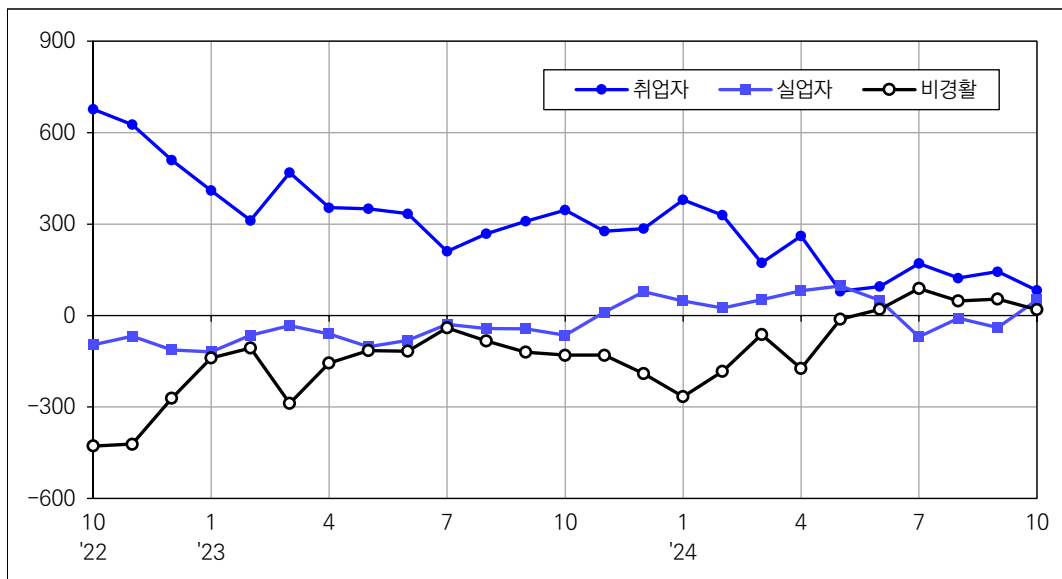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감소

○ 2024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 증가(전월대비¹⁾ 2만 명 감소)함.

- (연령별) 20대와 40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실업자는 크게 늘어 20~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됨.
- (제조업·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
-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숙박음식 및 정보통신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됐고, 예술스포츠는 감소 전환됨. 반면 교육서비스는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임시직은 증가폭이 축소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5만 1천 명 증가(전월대비 7만 1천 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1천 명 증가(전월대비 3만 3천 명 감소)함.
- (확장실업률)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8.5%로 전월대비 0.3%p 증가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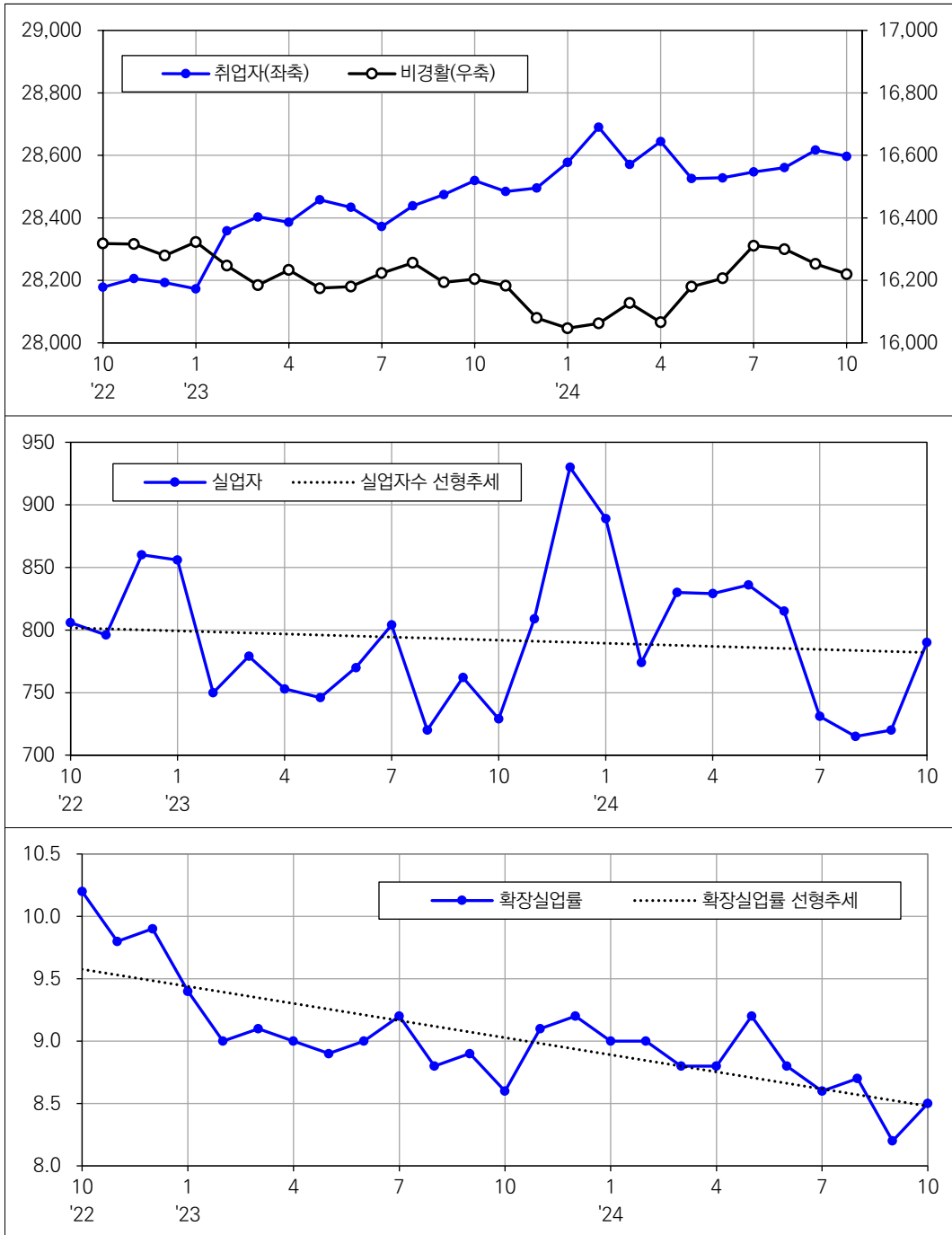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상), 실업자(중) 수 및 확장실업률(하)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와 4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20~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됨.

- 20대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 전환됐고,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30대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운수창고 및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보건복지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40대는 운수창고, 숙박음식 및 금융보험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교육서비스는 증가 전환됨.
- 50대는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교육서비스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운수창고 및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60세 이상은 농업어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에서는 감소 전환됨. 숙박음식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부동산업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17	-18	-7	(6)	-124	-150	-175	(-23)	99	77	67	(19)
실업자	3	0	-4	(5)	-26	-14	11	(29)	10	-8	2	(6)
비경합	-14	-9	-14	(-10)	-69	-57	-60	(-22)	-85	-40	-35	(-19)
실업률	1.9	0.4	-2.4	(2.5)	-0.5	-0.2	0.6	(0.7)	0.1	-0.2	0.0	(0.1)
고용률	-0.7	-0.7	-0.2	(0.2)	0.2	-0.2	-0.6	(-0.2)	1.2	0.8	0.5	(0.2)
	40대				50대				60세 이상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68	-62	-72	(-22)	3	25	12	(-14)	231	272	257	(19)
실업자	-12	-17	18	(18)	0	-5	19	(29)	16	5	6	(-7)
비경합	-74	-74	-99	(-7)	67	39	16	(-19)	223	196	212	(31)
실업률	-0.2	-0.2	0.2	(0.3)	0.0	-0.1	0.3	(0.5)	0.2	0.0	0.1	(-0.1)
고용률	0.7	0.8	0.6	(-0.2)	-0.6	-0.3	-0.2	(-0.1)	0.1	0.4	0.2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운수창고, 숙박음식 및 정보통신업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전월대비 취업자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및 사업관리지원에서 감소함.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농림어업	-40	-42	-67	2	4	-22
광업	-2	-1	0	0	1	0
제조업	-35	-49	-33	-31	-22	3
전기·가스·증기	-2	-8	-3	-1	-1	3
수도·원료재생	-8	0	3	6	7	-5
건설업	-84	-100	-93	23	6	2
도매 및 소매업	-55	-104	-148	3	-30	-43
운수 및 창고업	94	79	52	29	-12	-15
숙박 및 음식점업	7	46	28	-12	21	2
정보통신업	101	105	68	13	9	-12
금융 및 보험업	32	36	24	4	9	-10
부동산업	-37	-12	-4	-14	16	8
전문·과학·기술	94	83	77	44	-5	5
사업시설관리지원	-30	-42	-62	26	-21	-11
공공행정·사회보장	25	43	35	-1	12	0
교육서비스업	9	12	84	5	17	32
보건 및 사회복지	63	75	97	-46	15	28
예술·스포츠·여가	19	2	-11	-5	-18	-4
협회·단체·수리·기타	-31	17	23	-21	42	4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	9	14	-2	8	0
국제 및 외국기관	-3	-3	-3	0	0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 10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은 확대됐고, 임시직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주는 감소로 전환된 반면 자영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교육서비스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임시직은 건설업에서 감소 전환됐고, 정보통신업 및 예술스포츠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숙박음식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상용직	99	79	91	-65	45	32
임시직	191	206	105	56	-5	-40
일용직	-101	-125	-100	18	14	-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6	17	-7	-20	2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64	5	44	50	25	18
무급가족종사자	-28	-38	-49	-10	-9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농림어업	2	4	3	2	2	-5	-1	-18	-12	10	4	-3	-38	-19	-31
제조업	-44	-59	-43	-9	-6	-5	7	9	-9	5	0	3	6	7	16
건설업	-25	-67	-56	15	20	-8	-56	-56	-35	0	6	7	-19	-4	-1
도소매	0	-33	-55	7	17	6	-9	-19	-15	9	-11	-30	-53	-45	-34
운수창고	63	50	42	12	19	12	13	10	8	-2	-3	-5	7	6	-2
숙박음식	15	20	28	36	61	29	-23	-24	-9	-12	-9	-7	-1	4	-1
정보통신	63	89	64	8	-1	-18	-1	-5	-2	11	9	7	20	10	14
금융보험	15	16	12	18	22	9	-1	1	-1	-4	-3	-2	3	0	6
부동산	-26	-7	-1	-13	-17	-18	0	-1	-1	6	9	7	-2	8	12
전문과학기술	72	61	47	10	8	12	-1	-1	-2	-8	-10	-3	20	23	24
사업관리지원	-12	-29	-50	17	8	11	-25	-20	-24	-10	-7	-8	-2	4	5
공공행정	6	26	19	17	18	18	2	-1	-2	0	0	0	0	0	0
교육서비스	20	34	54	-15	-30	-7	-3	-1	-1	-4	-4	-1	12	14	38
보건복지	-15	1	22	78	68	74	-5	-6	-4	4	7	1	1	4	4
예술스포츠	10	5	15	0	-12	-34	-2	0	4	10	12	7	2	-2	0
협회단체	-27	-12	-3	4	22	17	2	1	-3	12	18	20	-18	-8	-6
가구 내 고용	1	-1	-1	6	10	12	2	5	7	0	0	0	-3	-4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자가 15~29세와 40대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5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산업별로는 도소매업 및 운수창고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숙박음식, 금융보험 및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로 전환됨.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통학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여성은 통학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취업준비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표 5〉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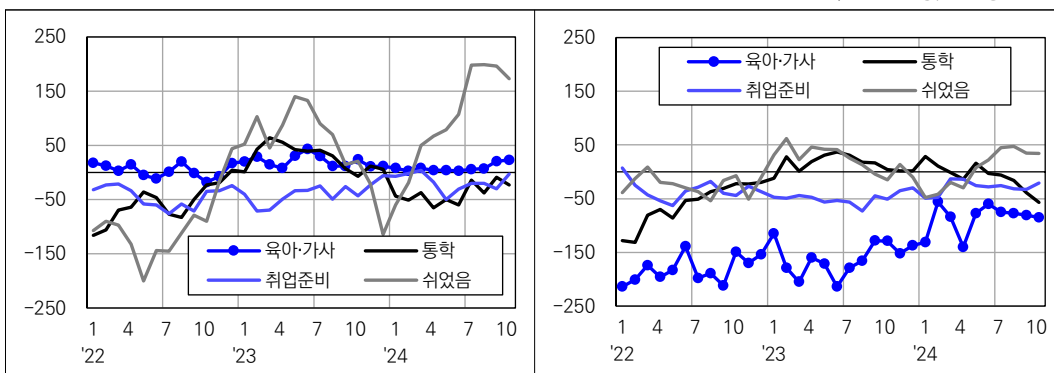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33	50	-10	23	-11	-3	-14	17	2	16	0	-3
농림어업	-3	1	0	0	-1	-1	0	0	-1	1	-1	1
제조업	-30	-17	-8	-6	-12	-6	0	7	0	-5	-10	-7
건설업	13	12	-5	-1	9	6	-2	-3	4	10	8	1
도매 및 소매업	0	17	6	5	-5	-4	-4	5	1	5	3	6
운수 및 창고업	4	12	0	-1	3	8	-1	1	0	2	2	3
숙박 및 음식점업	-7	3	-3	5	-1	-2	5	4	-5	-3	-3	-1
정보통신업	7	13	7	12	4	2	-4	0	-2	-2	2	1
금융 및 보험업	-2	7	0	7	-1	1	0	1	0	-2	0	0
전문·과학·기술	2	8	-13	-5	14	10	2	1	-3	-1	1	2
사업시설관리지원	-8	9	5	9	-3	-1	-6	-3	-1	6	-3	-4
공공행정·사회보장	-4	-1	1	5	-4	-3	-1	-1	-1	0	1	-1
교육서비스업	10	7	2	-5	2	3	3	4	1	1	3	3
보건 및 사회복지	-7	-4	0	-1	-7	-6	-5	0	9	6	-5	-3
예술·스포츠·여가	-6	-13	-3	-3	-4	-8	0	-2	-2	1	3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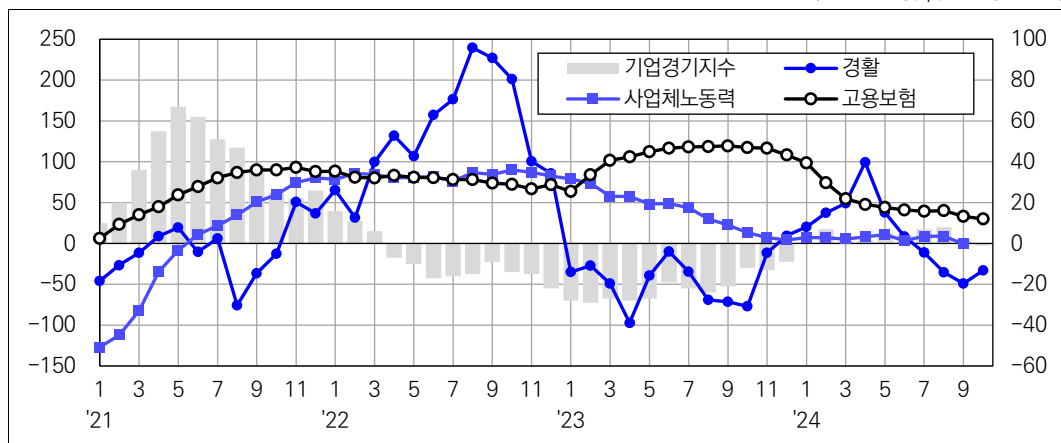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 축소

○ 10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취업자는 3천 명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꾸준히 축소됨.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전년동월 수준임.
- 기업경기지수는 76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함.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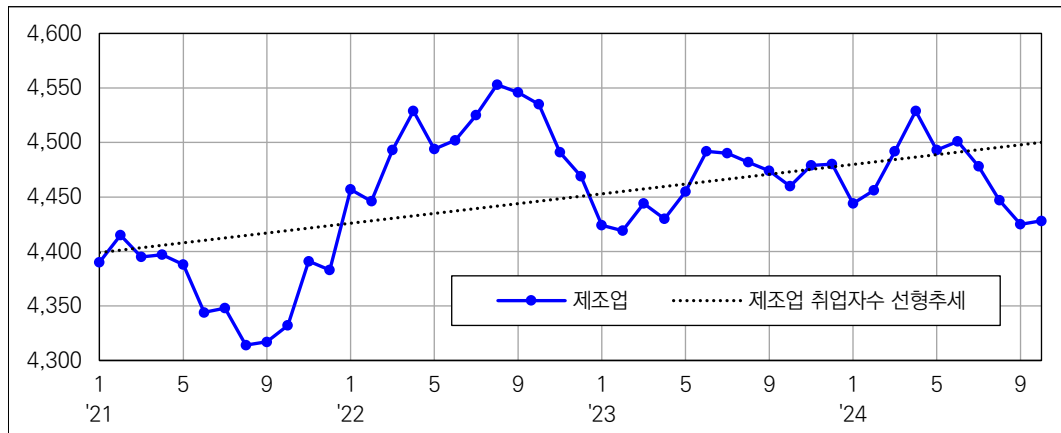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5]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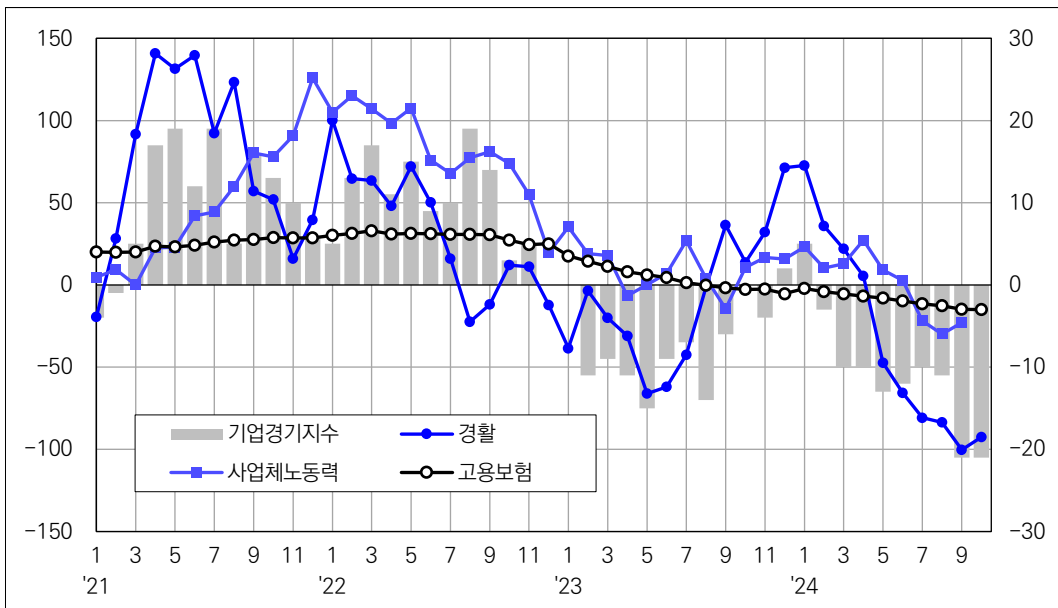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0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피보험자 수와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을 유지함.

[그림 6]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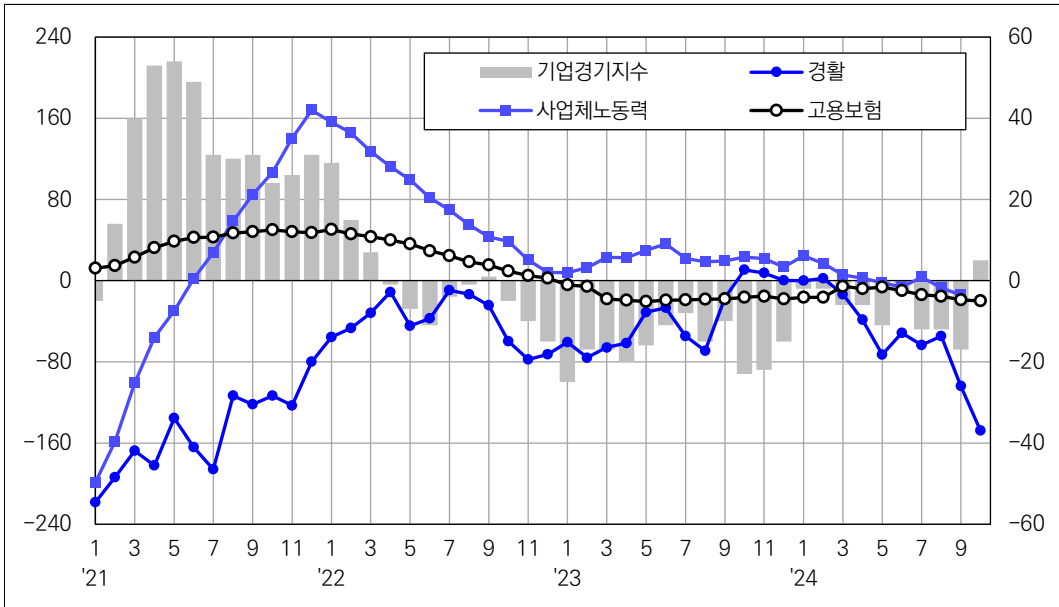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10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도소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14만 8천 명으로 확대됨. 피보험자 및 사업체 종사자 수도 감소폭이 확대됨. 반면 기업경기지수는 2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됨.
- (숙박음식)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피보험자 수 증가폭이 축소됨.
- (정보통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됨. 피보험자 및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감소폭을 유지함. 기업경기지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 (교육서비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피보험자 증가폭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확대됨.
- (예술스포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됨. 반면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7]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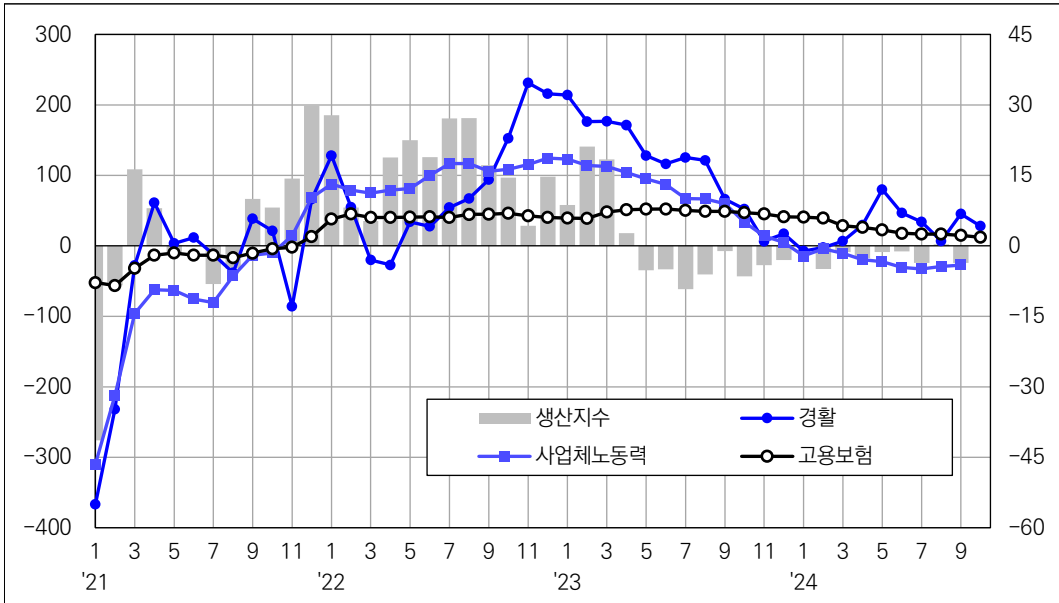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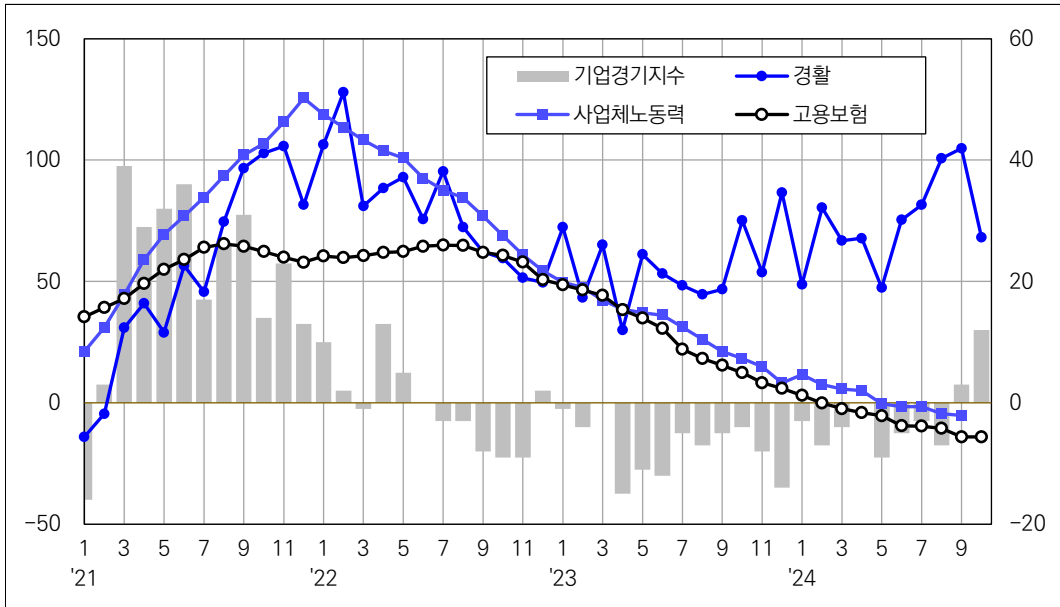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9]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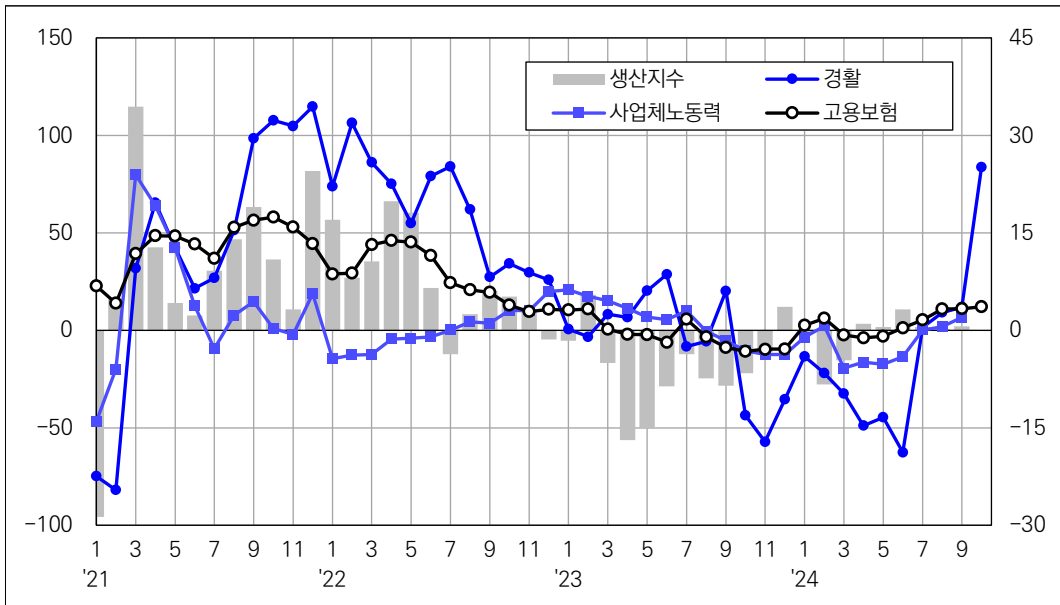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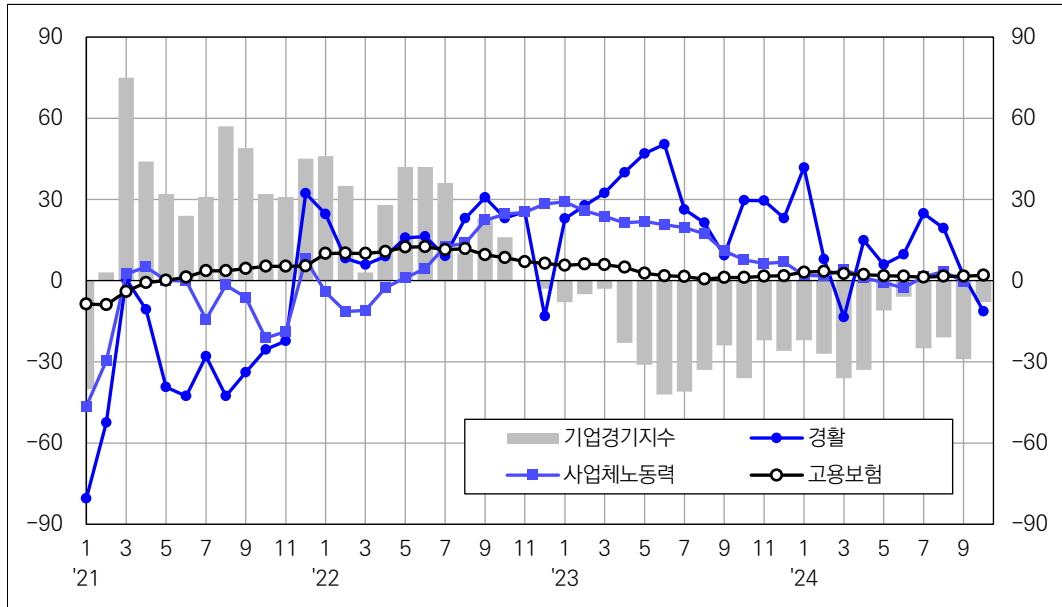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8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2024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7만 원(3.4%)이었음.
 - － 2024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411만 1천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78만 2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6%, 1.2% 증가하였음.
 -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이 축소되었음에도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음.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6.8%), 정보통신업(6.8%), 광업(6.4%)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산업에서 평균 특별급여 증가율(6.9%)을 크게 상회하였음.
 -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운수 및 창고업(-19.4%)과 숙박 및 음식점업(-10.5%)에서는 임금이 감소하였음.
-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4만 원으로 전년동기간대비 3.3% 증가하였음.
 - － 전년동기간대비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플러스(+)로 전환된 영향이 큼.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 감소폭이 둔화된 영향임.
 -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4.5% 증가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4%), 운수 및 창고업(-4.7%)과 숙박 및 음식점업(-3.6%) 등 일부 산업에서는 임금이 감소하였음. 특히 운수 및 창고업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전년동기간대비 23.6% 감소하였음.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4년 8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1~8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0.5%)은 물가상승률의 둔화와 명목임금의 증가로 전년동기간대비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2024	
						1~8월	8월	1~8월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3,916 (2.1)	3,742 (1.1)	4,040 (3.2)	3,870 (3.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158 (2.5)	3,970 (1.3)	4,293 (3.3)	4,111 (3.6)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424 (3.9)	3,424 (3.6)	3,540 (3.4)	3,534 (3.2)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22 (2.6)	228 (4.9)	237 (6.8)	237 (3.8)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512 (-6.3)	318 (-19.2)	516 (0.9)	340 (6.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740 (.3)	1,762 (2.5)	1,818 (4.5)	1,782 (1.2)
소비자물가지수		100.0 (0.5)	102.5 (2.5)	107.7 (5.1)	111.6 (3.6)	110.9 (3.7)	112.3 (3.4)	113.9 (2.7)	114.5 (2.0)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1.1	-1.5	-2.2	0.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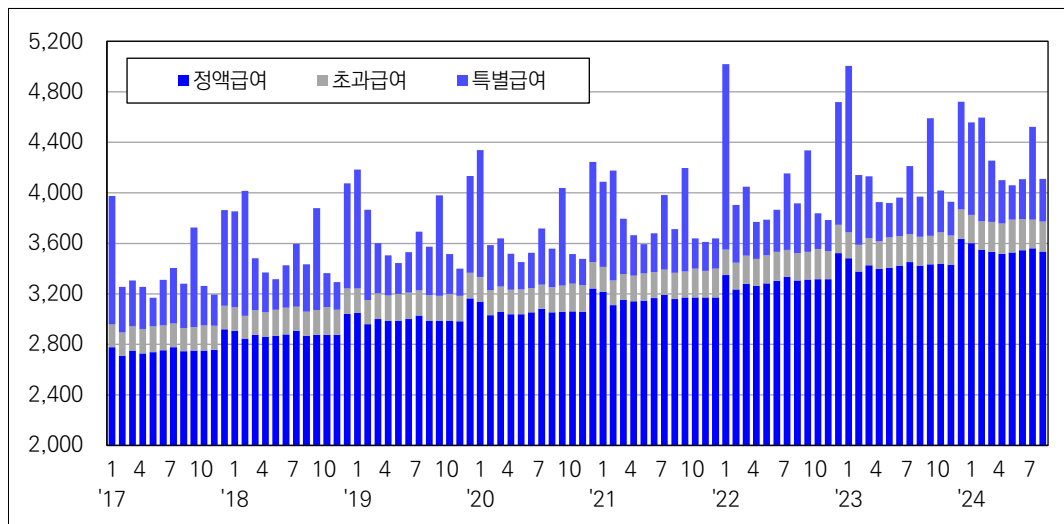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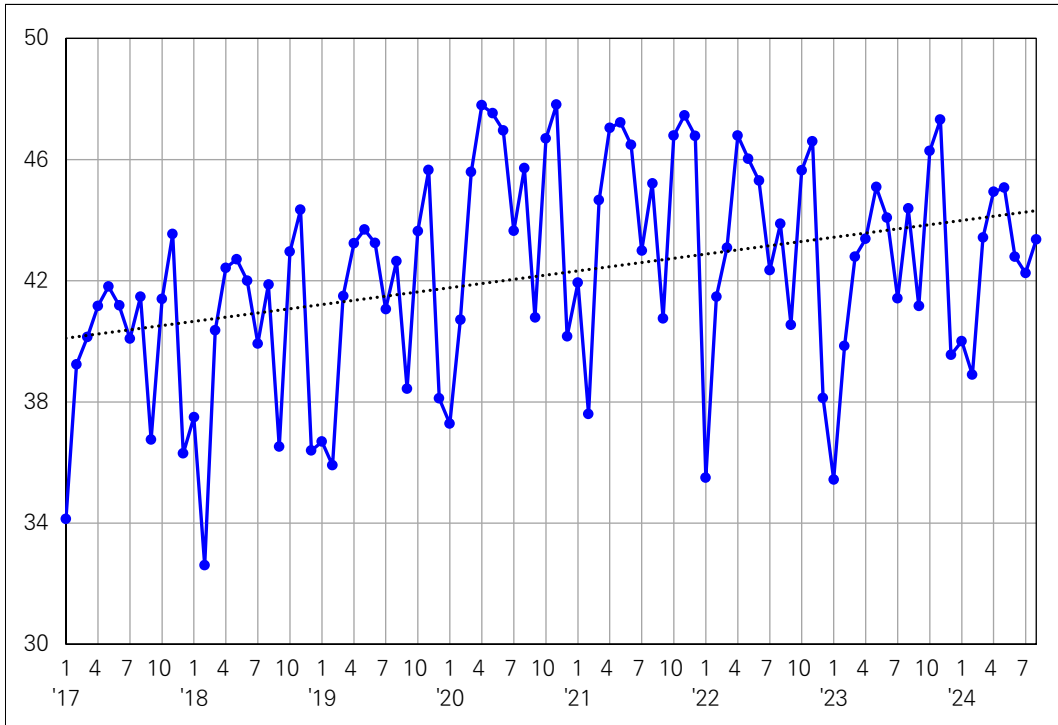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8월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폭이 더 확대

○ 2024년 8월 중소규모(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51만 8천 원)과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559만 4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3.4%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폭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더 확대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컸던 데 기인함.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14.1%), 정보통신업(53.9%) 등으로 나타남.
-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는 2.9% 감소하였음.
- (1~8월 평균)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3.3%, 2.7% 증가하였음. 중소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2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487 (1.9)	3,402 (0.5)	3,336 (3.3)	3,518 (3.4)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3,713 (2.3)	3,622 (0.7)	194 (3.5)	3,750 (3.5)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3,233 (3.7)	3,232 (3.2)	220 (3.2)	3,336 (3.2)
	초과급여	186 (5.7)	187 (0.8)	183 (0.0)	188 (2.7)	1,760 (6.6)	194 (3.4)
	특별급여	350 (8.7)	331 (-5.3)	297 (-8.9)	202 (-27.9)	5,594 (4.3)	220 (8.8)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1,707 (0.4)	1,735 (2.8)	5,734 (4.2)	1,760 (1.5)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6,023 (1.5)	5,412 (2.0)	4,426 (2.7)	5,594 (3.4)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6,164 (1.7)	5,539 (2.3)	427 (2.6)	5,734 (3.5)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4,283 (4.1)	4,289 (4.2)	881 (4.0)	4,426 (3.2)
	초과급여	377 (5.5)	406 (7.6)	398 (7.0)	409 (8.4)	2,105 (7.0)	427 (4.4)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1,483 (-5.8)	841 (-8.9)	3,602 (-2.4)	881 (4.7)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2,246 (-2.9)	2,168 (-2.3)	3,841 (9.0)	2,10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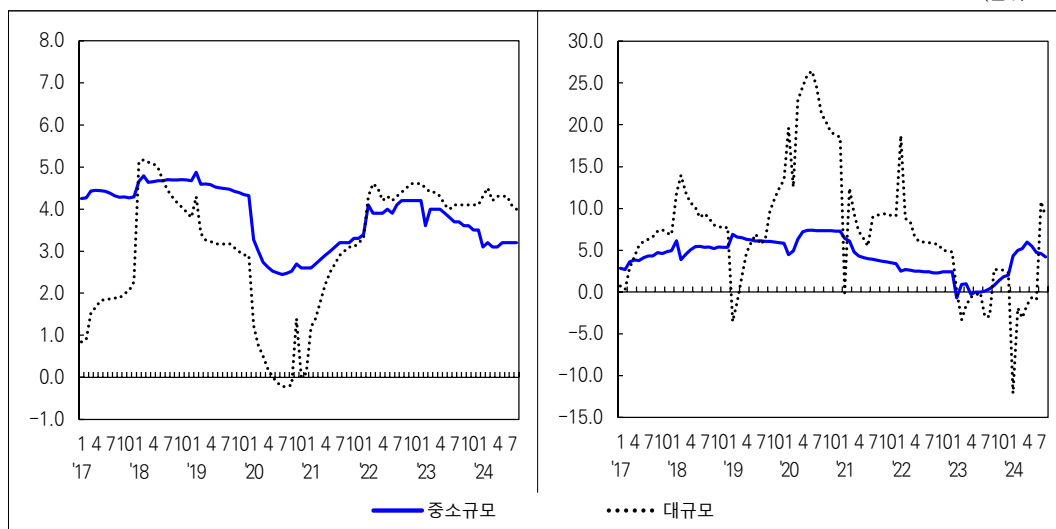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8월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4년 8월 임금 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광업(8.0%), 정보통신업(6.9%),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 순으로 나타남.

- － 이들 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데다 정액급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제조업의 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5.6%, 13.7% 증가한 영향으로 4.2% 증가하였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3,869 (4.9)	3,966 (2.5)	3,916 (2.1)	3,742 (1.1)	4,040 (3.2)	3,870 (3.4)
광업	4,608 (4.4)	4,636 (0.6)	4,590 (0.1)	4,242 (-2.0)	4,874 (6.2)	4,580 (8.0)
제조업	4,484 (5.8)	4,633 (3.3)	4,573 (2.8)	4,184 (1.2)	4,673 (2.2)	4,361 (4.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2.3)	7,188 (4.1)	7,161 (10.4)	5,479 (1.6)	7,452 (4.1)	5,800 (5.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1.8)	4,297 (3.1)	4,149 (2.8)	3,962 (-0.8)	4,299 (3.6)	4,226 (6.7)
건설업	3,229 (4.0)	3,359 (4.0)	3,322 (3.8)	3,266 (2.2)	3,437 (3.5)	3,404 (4.3)
도매 및 소매업	3,773 (6.3)	3,921 (3.9)	3,862 (4.2)	3,767 (3.5)	4,009 (3.8)	3,881 (3.0)
운수 및 창고업	4,040 (6.5)	4,185 (3.6)	4,116 (4.9)	4,014 (2.7)	4,281 (4.0)	4,119 (2.6)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5.2)	2,097 (4.7)	2,075 (4.4)	2,079 (3.2)	2,131 (2.7)	2,080 (0.1)
정보통신업	4,999 (4.2)	5,120 (2.4)	5,096 (2.0)	4,836 (3.5)	5,332 (4.6)	5,172 (6.9)
금융 및 보험업	7,324 (5.2)	7,338 (0.2)	7,332 (-0.4)	6,753 (1.4)	7,440 (1.5)	6,649 (-1.5)
부동산업	3,086 (4.5)	3,117 (1.0)	3,102 (0.4)	3,045 (2.0)	3,164 (2.0)	3,075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5.3)	5,464 (1.6)	5,320 (-0.1)	5,176 (-1.3)	5,590 (5.1)	5,394 (4.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3.7)	2,687 (4.0)	2,650 (3.6)	2,648 (5.2)	2,760 (4.1)	2,727 (3.0)
교육서비스업	3,435 (2.4)	3,508 (2.1)	3,528 (2.0)	3,411 (1.1)	3,632 (3.0)	3,495 (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3.6)	3,132 (0.3)	3,094 (-0.2)	3,063 (-2.4)	3,180 (2.8)	3,143 (2.6)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2.8)	3,058 (-0.6)	3,032 (-0.3)	2,879 (-6.8)	3,076 (1.4)	2,930 (1.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2 (4.9)	3,009 (6.2)	2,945 (5.1)	2,840 (3.0)	3,065 (4.0)	2,994 (5.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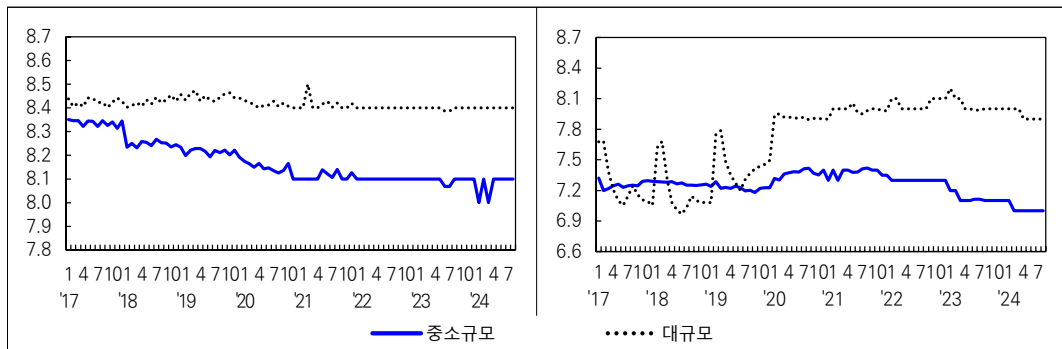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664만 9천 원)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18.6%)가 감소한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하였지만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8만 원)이었음.
- (1~8월 평균)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기간대비 임금이 증가하였음. 특히 광업(6.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1%) 부문에서 임금 증가폭이 컸으며, 제조업은 특별급여의 감소가 확대되면서 평균상승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8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4시간 감소(근로일수 1일 감소)

- 2024년 8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5.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63.6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6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7.4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4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이 컸음.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0%), 교육서비스업(-4.6%), 정보통신업(-4.3%) 부문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운수 및 창고업(-19.0%)과 숙박 및 음식점업(-13.8%)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음.
- 2024년 8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54.9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59.9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4시간, 5.3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1.2)	155.3(-1.9)	156.8 (-0.6)	160.3(-1.4)	154.9(-1.0)	154.9(-3.4)
	상용 총근로시간	165.9(-1.1)	164.0(-1.1)	165.5 (0.3)	169.7(-0.6)	164.0(-0.7)	164.0(-3.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1.2)	156.7(-0.9)	158.3 (0.6)	162.3(-0.5)	156.7(-0.8)	156.7(-3.5)
	상용 초과근로시간	7.7 (0.0)	7.3(-5.2)	7.2 (-6.5)	7.4(-2.6)	7.3(2.8)	7.3(-1.4)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1.0)	88.2(-8.5)	88.3 (-8.6)	88.6(-9.2)	85.7(-3.6)	85.7(-3.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1.2)	160.5(0.1)	162.0 (1.4)	165.2(0.4)	159.9(-0.6)	159.9(-3.2)
	상용 총근로시간	161.7(-1.0)	162.1(0.2)	163.6 (1.7)	166.9(0.7)	161.8(-0.5)	161.8(-3.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1.1)	150.9(0.2)	152.5 (1.7)	155.5(0.5)	150.6(-0.7)	150.6(-3.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0.9)	11.2(1.8)	11.1 (0.9)	11.4(3.6)	11.3(2.7)	11.3(-0.9)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2.3)	117.5(-5.9)	118.4 (-5.7)	123.4(-7.2)	112.0(-4.2)	112.0(-9.2)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8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

○ 2024년 8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5.0%)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5%) 부문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1.0시간),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70.8시간), 제조업(166.6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9.4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7.7(-0.2)	161.1(-1.1)	156.2(-1.0)	155.7(-3.4)
광업	174.8(-2.8)	168.5(-3.6)	168.8(-3.3)	169.7(-4.8)	170.6(1.1)	171.0(0.8)
제조업	171.1(-1.4)	170.5(-0.4)	171.7(1.0)	170.6(0.5)	171.0(-0.4)	166.6(-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0.9)	160.6(2.0)	159.8(4.9)	157.9(-1.7)	161.9(1.3)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71.2(-1.7)	173.9(-2.6)	170.6(-0.4)	170.8(-1.8)
건설업	134.3(-1.2)	128.7(-4.2)	129.5(-3.6)	130.7(-5.7)	128.7(-0.6)	129.4(-1.0)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61.0(-0.4)	165.9(-1.4)	159.2(-1.1)	159.6(-3.8)
운수 및 창고업	160.6(0.2)	160.6(0.0)	161.8(1.4)	167.3(0.6)	160.6(-0.7)	161.1(-3.7)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9.8(-4.3)	144.8(-5.4)	137.9(-1.4)	139.2(-3.9)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64.1(1.1)	171.7(0.5)	163.6(-0.3)	164.5(-4.2)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61.9(1.8)	167.8(-0.1)	159.9(-1.2)	159.4(-5.0)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8.7(0.0)	173.8(-1.4)	167.7(-0.6)	167.4(-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60.7(0.6)	165.9(-0.1)	159.4(-0.8)	158.9(-4.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9.6(0.2)	165.8(-0.1)	159.0(-0.4)	160.1(-3.4)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7.1(1.3)	142.2(-0.2)	135.2(-1.4)	136.6(-3.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52.2(-1.6)	157.2(-2.5)	149.6(-1.7)	150.2(-4.5)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50.1(-0.3)	154.4(-2.3)	147.1(-2.0)	149.0(-3.5)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0.0)	161.9(1.4)	166.6(0.4)	160.5(-0.9)	162.5(-2.5)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9건
 - －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4건)보다 5건 많은 수치임.
- 2024년 10월 조정성립률 61.9%
 - － 10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6.7%보다 45.2%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10.	19	22	13	4	9	8	1	7	0	1	10	61.9%
2023. 10.	14	6	1	0	1	5	0	5	0	0	11	1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10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10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10.	1	0	0	0	0	2
2023. 10.	0	1	1	0	0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7건

- － 10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80건)보다 17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3.0%(4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7.0%(154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10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10.	197	200	36	10	108	5	26	15	690
2023. 10.	180	171	40	9	86	7	13	16	56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 건수는 1건

- －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건)과 같은 수치임.
-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1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10.	1	2	1	0	0	1	0	0	4
2023. 10.	1	4	1	0	3	0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민주노총,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 10월 22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미조직 노동자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성별,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및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미조직 노동자 노조 가입 의향이었음.
- 먼저 임금 격차를 보면, 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0만 원이고, 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296만 원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268만 원으로 같은 성별의 정규직과 9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고,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212만 원으로 같은 성별 정규직과 84만 원 차이를 보였음.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약 397만 원이지만,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305만 원이었음.
-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약 272만 원으로 나타나 300인 미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음.
- 노동시간의 경우 1주 평균 41.9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산업별로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건설업(약 45시간), 제조업(약 44시간), 운수업(약 45시간) 종사 노동자들은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었음.
- 다음,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및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보면, 분석 결과 44.2%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 가운데 57%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아 비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40.7%)보다 많았음.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사용자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9.1%였고, 이들 대상으로 다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답했음.
- 이외에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3시간으로 미적용 응답자의 평균 41시간보다 2시간 길었음.
- 마지막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의향을 보면, 미조직 노동자 절반 이상(65.1%)이 노조 가입을 희망했음.
- 노조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61.5%),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55.5%)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임.
- 미조직 노동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32.1%)를 바랐는데, 노조가

임금인상에도 도움이 된다(59.6%)고 봤음.

- 노조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문제로는 사내 복지제도 개선(39.7%)을 첫손에 꼽았고,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33%)과 안전하게 일할 노동안전 보장(32%)이 뒤를 이었음.
- 노조의 사회적 역할로는 다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교섭(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 확대(26.2%),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25.3%)이었음. 사내 권리보장과 사회적 저임금 해소에 노조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비중 38% ‘역대 2위’

- 10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 7,000명 줄어든 1,368만 5,000명으로 집계됐음.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8월(-9만 4,000명) 이후 3년 만임.
-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어난 845만 9,000명이었음.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어난 38.2%였음.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음.
-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늘었음.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 노동자 비중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난 57.3%로 역대 가장 높았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폭(27만 9,000명)은 남성(5만 8,000명)보다 5배 가까이 컸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9만 3,000명), 30대(8만 4,000명), 50대(3만 4,000명), 29세 이하(2만 7,000명) 순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1명(33.2%)은 60세 이상이었음. 이어 50대(19.6%), 29세 이하(19.0%) 순으로 많았음.
-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8만 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만 4,000명), 제조업(4만 명)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부동산업(-2만 1,000명), 건설업(-1만 2,000명)에서는 줄었음.
-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174만 8,000원으로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원 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204만 8,000원으로 9만 1,000원 늘어났음.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시간제 노동자 수가 1년 만에 38만 3,000명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50.3%(425만 6,000명)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

- 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규모와 비중 모두 최대를 기록했음.
-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95만 7,000원으로 19만 6,000원 늘었음.

◆ 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없어

- 10월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 명 중 99%가량인 835만 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임.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함.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서울대병원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 10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 협의 사항으로는 △공공병상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정부에 건의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에 대해 정부에 건의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와 업무영역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 금지 △의료대란을 이유로 직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강요 금지가 있음.
-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병동 간호인력의 일부를 진료지원간호사로 전환했음. 그러나 진료지원(PA) 간호인력으로 뺀 자리에 간호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 의사 업무 대체를 위해 도입한 진료지원간호사제도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법적 보호장치가 없고, 업무 범위도 넓고 모호하여 각종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병원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음.

◆ 교원 타임오프 한도 최초 결정, 민간의 49% 수준

- 10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혁)가 12차 전원 회의를 열고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음.
- 전체 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음. 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지난 6월부터 11차례 전원회의, 13차례 간사회의, 2차례 공익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음.
- 이날 의결안을 보면 노조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함. 구체적으로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100~299명 최대 1천500시간 △300~999명 최대 2천 시간 △1천~2천999명 최대 4천 시간 △3천~4천999명 최대 9천 시간 △5천~9천999명 최대 1만 2천 시간 △1만~1만 4천999명 최대 1만 4천 시간 △1만 5천~2만 9천999명 최대 2만 시간 △3만 명 이상 최대 2만 5천 시간이었음.
- 연간 사용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음. 풀타임 노조 전임자는 통상 연 2천 시간의 타임오프를 사용함.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경우 최대 2명, 100~999명은 최대 3명 사용할 수 있게 했음.
-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차이를 두지 않았음. 논의 과정에서 사립 교원의 경우 국공립 교원과 달리 100% 민간 타임오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립학교에도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교원인 만큼 일반 노조와 다른 점을 감안해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구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음.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칭하는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천 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음. 해당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배정된 타임오프 시간을 민간과 비교하면 49% 수준임. 조합원수 3천~9,999명의 면제 한도는 민간의 54~64% 수준임.
- 다만 대학 교원인 고등교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개별학교 단위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됨. 개별학교 단위로 할 경우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대다수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됨.

◆ 세브란스에서 효과 거둔 ‘주 4일제’ 실험, 다른 병원으로 확대

- 11월 6일 보건의료노조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 산별중앙협약서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교대노동 개선, 노동 강도 완화, 건강권 보호,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 균형 실현을 위한

- 주 4일제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업장별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앞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호사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 주 4일제가 일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범사업 결과,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한 병동 간호사의 전년 대비 퇴사율은 신촌의 경우 3.6~6.2%포인트, 강남의 경우 8.8%포인트 감소했음.
 - 환자에 대한 친절 건수도 1.5~2.6배 증가했음. 주 4일제를 한 간호사의 월평균 근무일은 4.8일 감소했고, 휴무는 3일, 휴가는 0.8일 증가했음.
 - 수면장애(26.1%→13.6%), 근골격계 질환(34.8%→18.2%) 등이 줄어 간호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76개 의료기관은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임.
 - 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임.

◆ 유·사산 시 휴가 5→10일 확대, 배우자도 3일 신설

- 10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도 신설하기로 했음.
-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임신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함.
- 현재는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따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3일로 신설함.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함.
- 광역버스 내 임신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서

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함.

- 이 밖에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혜택 알리미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음.

◆ 20대 직장인 69.7%가 “칼퇴근”

- 10월 21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이 끝난 뒤 정시에 퇴근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23.3%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6% 포함)고 응답했다고 밝혔음.
- 나이대로 보면, 정시에 퇴근한다는 20대가 69.7%로 가장 적었음. 30대는 77.9%, 40대는 74.7%였고, 50대가 81.5%로 가장 많았음. 흔히 젊은 MZ 세대일수록 근무 시간이 끝나면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근할 것이란 통념과는 다른 결과인 셈임.
-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다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업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음. ‘사무실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라는 응답도 36.1%에 달해 과중한 업무와 잘못된 직장 문화가 칼퇴근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체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50대 남성 정규직 노조원의 경우엔 ‘업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 미만 받는 20대 비정규직 직장인일수록 ‘사무실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퇴근 시간 직전에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말에도 37.0%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또 퇴근 뒤나 주말, 공휴일, 휴가 때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셋 중 두 명꼴(64.3%)로 그렇다고 응답했음.
- 빈도를 보면, ‘주 1~2회’라고 대답한 직장인 21.5%, 월 1~3회라고 응답한 이들이 19.6%였음. 그런데 그 이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에 5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음.

◆ ‘민원인 갑질’ 당한 직장인 60%는 “참거나 모르는 척”

- 10월 20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6%는 고객이나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 민원인 상대 업무가 많은 중앙·지방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26.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60명에게 당시 대응을 묻자 61.9%는 피해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음.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나 됐음.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이는 26.3%에 그쳤음.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이들은 주로 20대(74.2%), 여성(68.4%)이었음.
-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을 맞아 실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음.

◆ 직장인 23.4% '회식서 음주 강요' 경험

- 10월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1년간 회사나 부서 회식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연 1~10회'가 43.7%로 가장 많았음. '없다'(24.4%), '월 1~3회'(19.4%), '주 1~2회'(10.8%)가 뒤를 이었음. 회식 시점은 '업무시간 이후'가 71.4%로, '업무시간 이내'(23.1%)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회식을 한다고 답한 직장인 23.4%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술을 마시라는 강요를 받았을 때 대처는 '술을 마셨다'는 응답이 72.9%로, '음주 강요를 거부했다'(27.1%)에 비해 2.7배가량 많았음. 연령대별로 보면 '거부했다'는 답은 2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18.9%로 가장 낮았음.
- 음주뿐만 아니라 노래방 참석도 강요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음. 회식 이후 노래방 참석과 관련해 5명 중 1명(20.4%)은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참석을 강요받았을 때 '참석했다'는 응답이 72.7%였고, '거부했다'는 27.3%였음.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 ... 악성 고객은 여전

- 10월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10곳 중 7곳가량의 사업장은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은 71.2%였

- 음.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질문에 55.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 감정노동에서도 원·하청 간 문제가 드러났음. 상급기관이나 원청에서 평가하는 고객 관리 지침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므로 가해 고객을 피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3.1%였음.
 - 회사의 인사고과 시 고객을 피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46.9%였음. 특히 민간부문(34.6%)에 비해 공공부문(51.5%)에서 이 같은 응답이 더 많았음.
 - 실태조사는 지난달 20~30일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음.

◆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기업 규모 상관없어”

- 11월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들에게 직장 선택 시 선호 사항을 묻자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는 87%였고, ‘임금·복지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3%로 뒤를 이었음. 59.1%는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했음.
- 청년이 1순위로 꼽은 좋은 일자리 기준은 임금·복지(53.5%)였음. 이어 일과 삶의 균형(19.5%)과 직무 전문성(8.7%), 공정한 보상(8.2%) 순이었음. 복수응답을 허용해 응답자의 좋은 일자리 기준 1·2 순위를 더해도 임금·복지(69.2%)와 일과 삶의 균형(51.2%) 순으로 순위 변동은 없었음.
- 청년들에게 세후 기준 희망 임금을 묻자 300만~350만 원이 25.9%로 가장 높았음. 500만 원 이상(19.7%), 400만~500만 원 미만(16.7%), 350만~400만 원 미만(14%)이 뒤를 이었음.
- 적정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청년 2명 중 1명(50%)은 주 40~4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음. 35~40시간과 30~35시간이라는 응답이 각 16%, 10.8%였음.
- 청년들에게 사내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내 복지제도 1순위를 묻자 특별휴가(21.4%)를 꼽았음. 이어 유연근무(14.8%)·채택원격 근무(13.4%)·가족돌봄휴가(9.6%) 순이었음.
-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는 사내 직무교육(57.7%)·외부 직무교육(40.7%)·자격증 취득 지원(34.9%) 순이었지만,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지원(35.1%)·사내 직무교육(21.8%)·외부 직무교육(13.1%)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개 시·도 청년 4,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음.

◆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시 비용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 11월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음.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이유로 들었음.
-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이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음. 이어서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응답했음.
-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답했음.
-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음.
-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으로 답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